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사람도 동물도 지친다

지역 온열질환 231명… 사망자도 전남60개농가 가축 3만여 마리 폐사 기상청 “최소 열흘간 폭염 지속” 야외작업 자제… 더위 대비해야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전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곳곳에서 온열질환자 발생과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광주 31명, 전남 200명으로 총 231명이며 이들 중 사망자는 1명이다.

체감온도 36.4도를 기록했던 지난 3일 오후 2시51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발일하던 80대 여성 A씨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A씨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하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체온은 42도로 측정됐으며 소방당국은 열사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10시10분께 북구 연제동 파크골프장에서 야외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공공근로자 B(37)씨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B씨는 체온이 37.7도까지 오르며 손·입술 등에서 열경련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일 광주 북구 우치동물원에서 알락꼬리원숭이가 수박과 샤인머스켓 등 제철과일로 만든 얼음 특식을 먹으며 더위를 잊고 있다. 김양배 기자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농가가 밀집한 전남지역에서는 폭염으로 가축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전남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의 60개 농가에서 가축 3만3639마리가 폐사했으며, 피해액은 4억4300만원 규모에 이른다.

폐사된 가축은 닭 3만1758마리, 돼지 1029마리, 오리 852마리로 현재까지 신고된 어패류나 작물 피해는 없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

전역의 최고기온은 33~36도의 분포를 보였으며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특히 광주는 지난달 20일부터 17일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폭염특보는 일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의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씨가 최소 열흘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의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 주변을 뒤흔들면

서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 2018년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반도의 대기 상층은 티베트 고기압이 차지해 고기압권에서 발생하는 '단열승온(斷熱昇溫)' 현상에 따라, 중하층은 북태평양고기압에서 고온다습한 공기의 유입과 함께 햇볕에 공기가 달궈지면서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다.

'단열승온'은 단열 상태에서 공기의 부피가 수축하면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즉 대기 하층부터 상층까지 전 층

에 뜨거운 공기가 가득 찬 상황이다.

지난 1994년과 2018년에도 올해와 같이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강하게 발달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으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난 바 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5월20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를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에 대비한 건강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 △매일 기온 확인하기 등을 제시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가장 더운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이나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며 "기온과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더위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재해대응반을 운영하고 환풍기 등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해 가축 폭염 폐사 등 축산농가 피해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고온에 취약한 닭, 돼지 등이 폐사·성장 지연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축사 온도를 철저히 관리하고, 충분한 음수 제공 등 사육관리 요령에 따라 가축의 건강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CT조영제 과민반응 사망' 환자 유족 손해 일부 승소

법원 "위험성 설명 부족 책임"

신장 이식 수술 사전 검사 과정에서 투여한 조영제 과민 반응으로 숨진 신부전증 환자의 유족이 병원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조영제로 인한 과민 반응을 예상하기 어려워 의료진 과실은 크지 않더라도, 지적 장애가 있던 환자 당사자에게 의료행위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중증 신부전증 투병 중 숨진 A씨 유족이 전남대학교병원과 소속 의료진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과 의료진 1명이 공동으로 유족 5명에게 A씨가 받아야 할 위자료의 상속분에 따라 총 1499만999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다른 청구는 각기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지적 장애 3급인 A씨는 2019년 8월 전

남대병원에서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 이후 전남대병원에서 동정맥루 수술과 인조혈관 삽입술, 혈전 제거술을 차례로 받았다. 그러나 다른 병원에서도 투석 도중 동정맥루가 다시 막히자, 2020년 5월9일 전남대병원에서 혈전 제거·혈관 확장 수술을 받았다.

사후 뒤 의료진은 향후 A씨가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전 검사로 허부 전산화 단층촬영(CT) 검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CT검사를 마친 A씨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한 달여 지나 '폐혈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유족들은 "만성 신장 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A씨에게 조영제로 인한 과민 반응(아나필락시스·anaphylaxis)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혈관 제거술 등을 받고 회복 중인 A씨에게 과민 반응이 예상 가능한 조영제를 쓴 CT검사를 진행했다"며 진료 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영제를 사용한 CT검사와 관련해 의료진 주의 의무 위반 등 진료 과실 자체는 없었다고 봤다.

다만 문제가 된 CT검사에 앞서 의료진

의 동의·설명 의무는 충분치 않았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 동의서 양식에는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적혀 있을 뿐, 중증 신장질환자에 대한 조영제 투여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위험성은 명시돼 있지 않다. CT검사를 의뢰한 의사는 설명 의무 이행 조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의료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평가하고 자신이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환자라면 그 보호자 등에게도 제대로 설명해 실질적인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은지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 (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